

광주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단5498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E, D 사이에 2019. 4. 12. 체결된 55,500,000원에 대한 증여를 취소한다. 피고는 위 55,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4,894,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E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16764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24. 'E은 소외 회사에게 12,376,269원 및 그 중 3,168,950원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3. 15.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소외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20526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22. 'D은 소외 회사에게 2,426,134원 및 그 중 1,056,225원에 대하여 2006. 4. 2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4. 13.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2020. 1.경 원고에게 위 각 지급명령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E, D의 자녀이다.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4. 12. 공유자인 소외 I, J으로부터 2019. 3. 3.자 매매(거래가액 193,5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 4. 12. 주식회사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1,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38,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3,5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138,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나머지 55,500,000원(= 193,500,000원 - 138,000,000원)은 부모인 E,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2019. 4. 12.(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자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E, D에 대한 2020. 12. 10.까지의 이 사건 채권원리금 24,894,175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E, D으로부터 55,500,000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금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E, D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